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4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임오경 · 조계원 · 윤준병

이정문 · 김재원 · 황운하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보장제도"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보 장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 외의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 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보장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제1조(목적)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u>적정한</u>	<u>가격 안</u>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	<u>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과</u>
<u>산자와</u>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① ~ ④ (생 략)	호)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u> 여야 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u>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u>
	<u>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u>
	따라 확정・고시된 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

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 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 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 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 격보장제도"라 한다)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가격보 장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 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 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가격보장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보장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 항에 따라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의 적용을 받는 품목 외의 농 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 원회) ①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

<신 설>

<u>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u> 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 3. 차액의 지급비율
-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